



가

[2013.3.23] [24412 , 2013.3.23,]

가 (

) 02 - 2020 - 5133

1 < 2009.8.13 >

1 < 2009.8.13 >

1 () 「 가 」

[2009.8.13]

2 () 「 가 」 (" ") 2 3

1. : 6 " " 가

(宣揚)

2. : , , 가

3. 가 : 가

가

4. : .

5. : 가 가 (靈柩用)

가

6. 가 : 가

가

7. : , , 가 .

[2009.8.13]

3 (가) 4 2 가

1. 4 1 3 : 1 1 1-1 1-7

2. 4 1 4 : 1 1 1-1 1-7

3. 4 1 5 14 : 1 2 2-1 2-8

4. 4 1 6 15 : 1 2 2-1 2-8

1 2 2-8

1. 「 」 17 . 21 22

2. , , ,

3. 가

[[2012.6.27](#)]

3 2() 4 1 8 " "

1.

2.

3. 가

4.

5. .

6. 1 5

1 6 , . , 가 .

[[2011.6.30](#)]

4 (4·19) 4 1 11 "4·19 "
1960 4 19 가

4.19 가

. < [2012.6.27](#) >

4 1 12 "4·19 " 1960 4 19
가 4.19 가

6 4 14 1

. < [2012.6.27](#) >

[[2009.8.13](#)]

5 (가) 4 1 7 , 8 ,
14 · 15 , 79 1 4 10471 가

3 " 가 " r

」 2 . < [2011.6.30](#), [2012.6.27](#) >

[[2009.8.13](#)]

6 () 4 1 16 18 가
(" "), 가 (" ")
가 (" ") ()

가 . < [2012.6.27](#) >

1 ,

1. 가 가
2. (國權) (友邦) 가 가
3. 가 가 가
4. 가 가 가

[[2009.8.13](#)]

7 () 5 5 6 " 가 .
" 2 가 .
[[2009.8.13](#)]

8 () 6 1 가 , 가 가
(先順位者)가 가
. < [2012.6.27](#) >

1. 가 13
2. 1 5 1 ,
13 .
6 4 " " .<
[2011.6.30, 2012.6.27](#) >

1. 「 」 (武功勳章) · (保國勳章)(4 1 8 가)
(建國褒章) .
2. 가 가 가

[[2009.8.13](#)]

9 (가) 6 3 " "
. < [2012.6.27, 2013.3.23](#) >

1. :
2. :
3. :
- 3 2. :
4. 1 3 3 2 .
가. 「 」 30 46
:
「 」 30 46
(「 」) :
()
5. :
1 (" ") 4 1 3 6 , 14 가
15 , 가 가

.< [2012.6.27](#) >
가
「 」 32 가 .<
[2011.6.30, 2012.6.27, 2013.3.23](#) >

2 가 가
, , 가 (1 4 가
, 「 」 30 , ,
, 46 2 52
) .< [2012.6.27](#) >

2 가 , 가
. < [2012.6.27](#) >

- 가 (" ") 2 74 5
 .< 2012.6.27>
 [2009.8.13]
 [2012.6.27]
- 10 (가) 8 1 9 6
 가 가 .< 2012.6.27>
 가 1 가 .< 2012.6.27>
 가 2 . , 4 1 4 • 6 15
 .< 2012.6.27>
 [2009.8.13]
 [2012.6.27]
- 11 <2012.6.27>
- 12 <2012.6.27>
- 2 < 2012.6.27>
- 13 () 6 3 1 " "
 .< 2012.6.27>
 1. 6 3 2 6 5 가 가
 2. 가
 3. 4 1 4 • 6 • 12 • 15 17
 6 1 가
 [2009.8.13]
- 14 () 6 4 3 1 6 1 3
 .< 2012.6.27> .< 2012.6.27>
 3 . 가
 3
 [2009.8.13]
- 15 () 가
 60 가 .< 2012.6.27>
 가 1 .<
 2012.6.27>
 [2009.8.13]
- 16 () 가
 2 ,

가 6 1 .<

2012.6.27>

1 10 1 .<
가 1 .<

2012.6.27>

3 2 ,
가

.< 2012.6.27>

4 1 3 .

[2009.8.13]

17 () 가

.< 2012.6.27>

- 1. 2
- 2. <2012.6.27>
- 3. 가

가 1 .<

2012.6.27>

6 3 3 3 6 " "

.< 2012.6.27>

- 1. , 가
- 2. .
- 3. 가 가

가 3 2 3

.< 2012.6.27>

6 3 4 1 (.

) 3 2 .< 2012.6.27>

가 가 3 2 5

.< 2012.6.27>

가 3

2 .< 2012.6.27>

[2009.8.13]

[2012.6.27]

18 () 1 가 「 」 7 (

" ") .< 2012.6.27>

[2009.8.13]

19 () 6 4

가 . .

1 .
1 • 2 13 18 가

[2012.6.27]

19 2() 6 6 1
3 9 , 2
7

[2012.6.27]

2 < 2006.12.21 >
20 () 12 1 4 "
" 6 .

[2012.6.27]

21 () 12 2 15 2 3 "
" 2 . < 2012.6.27 >

[2009.8.13]

21 2 <2006.12.21 >

22 () 12 1 2 가 4
. < 2012.6.27 >

[2009.8.13]

23 () 11 2 7 " " . <
2012.6.27 >

- 1.
- 2. 2
- 3.

가 12 1 2 가 4 2 1
. , 11 2 5 가 1 2 2
1 1 . < 2012.6.27 >

<2012.6.27 >

[2009.8.13]

24 (가) 13 2 1 가
가

. < 2012.6.27 >

1 가 . < 2012.6.27 >

[2009.8.13]

24 2() 13 2 2

() 가

. < 2012.6.27 >

[2009.8.13]

25 () 14 가 5

[2012.6.27]

25 2(") 14 (" 가

[2012.6.27]

25 3() 14 2 2 1 "

- 1. , , : 3
- 2. , , :
- 3. , , , , () : 가 . 가 가
- 4. , , , , , : 가
- 5. :
14 2 2 2 " "

- 1.
- 2.
14 2 2 3 " "

- 1. : 1
- 2. :
1 , 2 3 (" ")

[2012.6.27]

25 4() 가 (14 1 가) (가

- 1.
- 2.
- 3. .

[2012.6.27]

25 5() 14 4 가 (「 25 「 2 1 「)

- 1.
- 2.

1 가

- 1.
- 2.
- 3.
- 4.

가 가 ,

가 14 4 2

[[2012.6.27](#)]

26 () 15 5 2

[[2012.6.27](#)]

26 2(가) 15 2 1 1 " " 7

15 2 1 5 3 가

[[2012.6.27](#)]

26 3(가) 16 1 " " 1
16 가 .< [2013.1.14](#)>

- 1. 1 1 : 140 2
- 2. 1 2 : 88 1
- 3. 1 3 : 42 2

[[2012.6.27](#)]

27 <[2006.12.21](#)>

27 2() 16 2 5 4

[[2012.7.31](#)]

27 3(6·25) 16 3 5 5

6·25 . < [2012.6.27](#), [2012.7.31](#)>

[[2009.8.13](#)]

28 () 17 6 가

1 .< [2012.6.27](#)>

[[2009.8.13](#)]

29 () 12 · 14 · 15 · 15 2 · 16 · 16 2 16 3
· 가 · 가 · 6·25

23 1 15 ,

. < 2012.6.27 >

1

가

1

1

6

5

,

7 12

11

[2009.8.13]

30 () 18

가

.

,

「

」

36

1

. < 2010.5.4, 2010.11.2, 2012.6.27 >

[2009.8.13]

31 () 20

가

6 2

[2009.8.13]

32 <1988.12.31 >

32 2() 가

("

")

가

[「

.

」

(" ")

「

」

(" ")

.

]

.

,

가

. < 2012.6.27 >

1. 11

2. 26

(25 25 2

)

3. 38

4. 39

5. 42

6. 55

7. 63 2

1

가

.

,

가

가

. < 2012.6.27 >

2 가

[2009.8.13]

32 3() 가

가

.

(

)

1

,

. < 2012.6.27 >

[2009.8.13]

[2012.6.27]

33 () , 가 가

. < 2012.6.27 >

[2009.8.13]

34 () 83 2

. < 2012.6.27 >

1. 11 26

2. 1

1

가

. < 2012.6.27 >

[2009.8.13]

[2012.6.27]

3 < 2008.9.26 >

34 2() 22 3 3 " "

6

22 3

, 가

가

22 4

가

[2012.6.27]

35 () 가 ,

가 23 1

. < 2013.3.23 >

1

23 2

. . . .

10

(

" . ")

. < 2013.3.23 >

[2009.8.13]

36 () , , 가

.

, 가

. < 2012.6.27 >

가 1

.

. <

2012.6.27 >

[2009.8.13]

37 ()

.

[2009.8.13]

38 <1993.12.31>

39 <2005.7.27>

40 () . 가 . < 2012.6.27 >
[2009.8.13]

41 () 가 가
. < 2012.6.27 >
1 .
2 .
. < 2012.6.27 >
[2009.8.13]

42 () 22 1 가 22 2
25 1 (.
.) . < 2012.6.27 >

- 1. 22 1 1 2 가 .
 - 2. 22 1 3 4 가 .
- (.) . 가

25 2 (" ")
22 1 3 4 가 70 가 1

- 1. 22 2 2 (" ")
- 2. 22 2 3 4

3. <2012.6.27>

가 25 1 . <
2012.6.27 >

- 1. 22 1 1 2 22 2
- 2. 22 1 3 4 22 2 1
- 3 (.)

22 1 3 4 가

가

.< 2012.6.27 >

25 3

가

가

,

가

.<

2012.6.27 >

가 22 1

.< 2012.6.27 >

25 1

[2009.8.13]

42 2() 25 4

)

가

,

가

(

.< 2012.6.27 >

25 4

가가

.< 2012.6.27 >

1. 42 3

70

가

가 가

2.

가 1

가

.< 2012.6.27 >

[2009.8.13]

42 3(

• ,)

25

2 1

6 3

25 2 1

가

1

25 2 1 2

가

1

1.

70

2. 가

가

가

25 2 1

1. 25 2 1 1

2

「 • 」 2

•

: 「 •

」 42

46

2. 25 2 1 2

: 「 」 31

1 1

25 2

(

) 가

1 25 2 1

가

[[2012.6.27](#)]

43 () 26 1 2 " "

1. 22 1 1 2 22 2

25 2 1

2. 22 1 3 4 22 2 1 , 3

() 25 2 1

()

26 7

26 4 15 10 15 2 ,

가 가 29 1

2

[[2012.6.27](#)]

44 () 22 2 25 2 1

가

10 가

. < [2012.6.27](#) >

[[2009.8.13](#)]

45 <[2012.6.27](#)>

4 < [2008.9.26](#) >

46 <[2012.6.27](#)>

46 2() 29 1 5 " "

6

29 3 " " 3

[[2012.6.27](#)]

47 () 30 2 " " 9

15 37

[[2009.8.13](#)]

48 (가) 31 5 가 가 8

[[2009.8.13](#)]

49 () 가 가 가

. < [2012.6.27](#) >

[[2009.8.13](#)]

49 2() 31 2

가 . < 2012.6.27 >

1. 32 (" ")

:

2. 34 :

[2009.8.13]

50 (가) 32 1

(" 가 " 20

가 . 가
「 가 」 6

[2009.8.13]

51 () 50 (" ") 가

가 가 가

4

. <

2012.6.27 >

가 1 가 5

7 가 . < 2012.6.27 >

<2012.6.27 >

가 2 「 가 」 「 」

(" ")

가 . < 2012.6.27 >

<2012.6.27 >

가 1 , 2 4

. <

2012.6.27 >

1. 「 가 」 28 2 1 3 「 가 」 27 2 1 3
가

2. <2012.6.27 >

3. 가 2

4. 가

가

[2009.8.13]

52 (가) 가 가 33

30

. < 2012.6.27 >

[2009.8.13]

53 () 33 2 1 9 9 . , 33
2 2 9 1

33 2 2 3 "

1. 가 가 100 20 가
가

2. 「 」 4 6 (" 100 20
") 1

3. 가 가 100 20
가 가

4. 가

[2009.8.13]

54 () 30 2 3 (" ")

33 3 1 가 ,
30 . < 2012.6.27 >

33 3 2 가 . < 2012.6.27 >

1. 1

2.

3.

4. 31 1 3 가
가

가 . < 2012.6.27 >

[2009.8.13]

55 () 가 34 1 , 5

33 2 . < 2012.6.27 >

1 10

가

34 3 가

34 3 2 " "

1. 가 1

2.

3. 가 가

3 30 가

34 4

[2009.8.13]

56 () 34 5 35 . ,
35 49 2 2 35

<2012.6.27>

[2009.8.13]

[2012.6.27]

57 (6·25 ·) 1953 7 27 「

가 1993 1 1 12 56 1
55
1 36

[2009.8.13]

58 () 34 2 2 . <

2012.6.27>

- 1. 34 2 2 1 :
- 2. 34 2 2 2 :
- 3. 34 2 2 3 :

<2012.6.27>

34 2 2 1 2 " " . <

2012.6.27>

1. 1

2.

3.

4. 3 (滯拂)

5. 가 가

가
34 2 2 2 " " 6 .

[2009.8.13]

59 () 35 , , 4·19 ,
「 」 3 3 . < 2012.6.27>

1

[2009.8.13]

60 () 35 2 . , 33

2 2 30
가 8 9
「

[2009.8.13]

61 () 36 3
30 .

[2009.8.13]

61 2() 37
10 가 . < 2012.6.27 >

[2009.8.13]

61 3() 38 1 , , 4 · 19 ,
(自營事業)
가 . ,
가 38 2 가

. < 2012.6.27 >

[2009.8.13]

[2012.6.27]

61 4() 39 1
. < 2012.6.27 >

1.
가. 38 2
. 「 」 2 2 1

2. : 가
가 1 가

. < 2010.7.12, 2012.6.27 >

1 2 가

[2009.8.13]

5 < 2008.9.26 >
1 < 2009.8.13 >

62 () , , 4 · 19 , (")
") , 가

1.

2.

3.

가가 가 「 」 3
42 3 가
50

[2009.8.13]

63 () (. . (" ") 가
) () 「 」 3 4
1 가 .< 2012.6.27>
2012.6.27>

62 1 1 「 」 3
가 14 가 .< 2012.6.27>

가 가 .< 2012.6.27>
42 2 1 2 .

[2009.8.13]

63 2() 42 4 " " 6
42 4 1 7 , , 4·19 ,
가 100 20 , 62 1 1
가가

[2012.6.27]

64 () 42 5 60 .<
2012.6.27>
42 7 「 」 2
75 42 7
(「 」 2 1) 100 60 .<
2012.6.27>
2 75 42 7 「
」 2 4 42 7
. < 2012.6.27 >

[2009.8.13]

64 2() 가 가 42 가
「 」 20

1 가가 「 」
(計上)

[2009.8.13]

64 3() 가

[2012.6.27]

2 < 2012.6.27 >

65 <2012.6.27 >

66 ()

가

1 , 가

[2009.8.13]

67 () 가 43 2 가 가

< 2012.6.27 >

1 (磨耗) 가

< 2012.6.27 >

[2009.8.13]

6 < 2009.8.13 >

68 () (貸付金) 48 2 12
가 , 2

< 2012.6.27 >

1. 56 2 5 (" ")

2.

3. 56 5 ()

4.

[2009.8.13]

69 () 52 1 가
< 2012.6.27 >

가 1 25 52 2

2

가

가

1 3

[2009.8.13]

70 () 53 1 , 가

1. : 3 12

2.

가. , : 20

. : 7

3. : 10

4. : 5

[2009.8.13]

71 () 53 2

가

가 1

[2009.8.13]

72 () 가 가

53 3

3

[2009.8.13]

73 () 53

가

1 1

가

가

. <

2010.11.15, 2012.6.27 >

1 72

[2009.8.13]

74 (가) 54 1 가

1. 가

가

2. 가

1 가

가

가

1

가

[2009.8.13]

75 () ()

55

1. .

2. 가

1

(1 1) 가 .< 2012.6.27>

가

2

30

.< 2012.6.27>

[2009.8.13]

76 () 가 , 가

61 1

.< 2012.6.27>

1

, 가

,

가

[2009.8.13]

77 <2008.9.26>

78 () 56 7 8

가

가

1

5

가

2

56 2

가

3

가

56 9

[2009.8.13]

79 <2009.8.13>

80 () 가

60 1

가

가

1

[2009.8.13]

81 (가) 61 1 가

가(時價)

가

가

1

가

가

가

가

가

1

2

가

가

가

[2009.8.13]

82 () 가 61

1

(隨意契約)

1

5

가

5

[[2009.8.13](#)]

83 () 가 62 2

3

가

[[2009.8.13](#)]

84 () 가

가

[[2009.8.13](#)]

7

< [2008.9.26](#) >

84 2() 63 "

. < [2009.12.7](#) >

1. 가 2

가

2. 가 (

, 「 」 26 1

1

2

, 「 」

24

25

1

3. 가 .

가

[[2009.8.13](#)]

84 3() 63 2 1

9 2

63 2 1

2

가

1

2

가

[[2012.6.27](#)]

85 () 가 3

3

1. 66 가

2. 1

, , 4 · 19

1

1

가 ·

3

가

가

66 1 " " 「 」 2
「 」 2 1 2
[2009.8.13]

86 () 67 가
가

- 1. 가
- 2. 가 8 가 가
- 가
- 3. 가 1 1
- 1 가
- 10
- 1 1 2 가
- 101 가 가

[2009.8.13]

87 () 68 가 가

[2009.8.13]

88 <2006.2.16>

88 2(가) 가 가 , 가

[2009.8.13]

88 3() 68 2 1

- 1.
- 2. 「 」 49 76
- 3.

68 2 1 33

[2008.9.26]

88 4() 가 4 1 4 6
1 1 (" . 1 ")

1 20 (「 」)
(自活勇士村)

1 가

[2009.8.13]

8 가 < 1997.9.30, 1998.8.21 >

89 <1998.8.21>

90 <1998.8.21>

90 2 <1998.8.21>

91 <1998.8.21>

92 <1998.8.21>

93 <1998.8.21>

93 2 <1998.8.21>

94 () 73 6·18

6 4 14 1

[2009.8.13]

94 2 <2012.6.27>

94 3 <2012.6.27>

94 4() 74 1 3 4 1 3 6

[2009.8.13]

8 2 < 2012.6.27>

94 5()

11

1

[2012.6.27]

94 6() (" ")

(互選)

[2012.6.27]

94 7() 74 7 6

가

1

7

(" ")

2

[[2012.6.27](#)]

94 8() 74 7 3 1 7

1.

2. 74 5 1 14

(" ") 1

[[2012.6.27](#)]

94 9() 74 8 1 8 "

74 5 1

[[2012.6.27](#)]

94 10()

1

[[2012.6.27](#)]

94 11()

가

가

[[2012.6.27](#)]

94 12() 94 5 94 11

[[2012.6.27](#)]

9 < [2009.8.13](#) >

95 () 가 75 1 가

(76 가)

30 . < [2012.6.27](#) >

가 1

7 15 . < [2012.6.27](#) >

1 2

가 . < [2012.6.27](#) >

[[2009.8.13](#)]

96 () 가 가 가

가 가

<

[2012.6.27](#) >

[2009.8.13]

97 () 76

1.

2.

3. 가

4.

5. 가 가

가 1 가 . < 2012.6.27 >

[2009.8.13]

98 () 78 1 79 1 5 " "

. < 2012.6.27 >

1. 가 가

2. . ,
78 2 " " 「 」 . ,

[2009.8.13]

99 () , 가

(日時) . <

2012.6.27 >

1. 78 1

2. 79 1 5

3. 79 3

1 . 가 .

< 2012.6.27 >

가 2 20 1 ,

. < 2012.6.27 >

[2009.8.13]

100 () 5 5 . 6 , 12 2 15 2 3 1

2 . < 2012.6.27 >

[2009.8.13]

101 (가 가) 6 3 가

가 가 가 가 . <

2012.6.27 >

[2009.8.13]

101 2() 82 7 1 (")
 ") 가
 1 가 ,
 .
 2
 가
 가 30

[2012.6.27]

101 3() 82 7 1 10 ,
 (1 1 12 31) 100 .

[2012.6.27]

101 4() 2
 . ,

[2012.6.27]

101 5()
 1.
 2. 가
 3. 82 7 1 2 3
 4. 가

[2012.6.27]

101 6 <2012.6.27>

101 7 <2012.6.27>

101 8 <2012.6.27>

102 (.) 가 83 1 (13 , 14 , 17
 21) (가
) , 13 , 14 , 17 21
 (가
) , , 3 , 7 19 ,
 21 , 22 , 32 35 , 37 , 40 , 42 44 50 .

< 2012.6.27 >

1. 6
2. 6 2
3. 6 3 , ,

4. 6 5 가
5. 9 4 가 5
6. 12 1 3
7. 13 2 , 24 1 24 2 가
8. 14 , 14 2 14 4
9. 15 1 · 15 2 1 · 16 1 · 16 2 1 16 3 1 ·
 가 · 가 · 6 · 25 , 17 1 3
 18 20
10. 32 3 33
11. 22
12. 36 1
13. 36 2
14. 40
15. 41
16. 42 4 5
17. 42 6 7
18. 25 4 42 2
19. 25 2 42 3
20. 26
21. 44
22. 31 49
23. 31 2
24. 32
25. 33 가 , 가
26. 33 3 1 2 ,
27. 34 ,
28. 34 2
29. 36 2 3
30. 37
31. 38 1 2
32. 39 1 61 4 ,
33. 42 2 63 ,
34. 43 2
35. 50 2 (가 · 36 41)
36. 52 1 2

- 37. 55 75
- 38. 56 1 3 , 5 , 7 8 (立保),
- 39. 59
- 40. 76
- 41. 62 2
- 42. 63 2
- 43. 74 10
- 44. 74 18
- 45. 75 ,
- 46. 76
- 47. 78 99
- 48. 79 1 4 ,
- 5
- 49. 82 6
- 50. 82 7
- 51. 86 .
- [<1999.12.31>](#)
- 가 65 63 64
- 가 83 2 46 56 59 62
- (
- 가) 「 」 2 1 2
- .< [2010.11.15](#)>
- 가 83 3 6 3 2 (1 1
-) .
- 가 .< [2012.6.27](#)>
- [[2009.8.13](#)]
- 102 2() 가 (102 가 .
-) 가 「 」 23
- 19 1 , 2 4 ,
- 가 . < [2012.6.27](#)>
- 1. 6 , 6 3 6 5
- 2. 6 2
- 3. <[2012.6.27](#)>
- 4. 가 가 가
- 5.
- 6. 74 2 74 4
- 7. 75 76
- 8. 78
- 9. 79

10. 1 , 2 6 9

[2012.1.6]

103 () 86 1 2 11 .
가 . 1 2 1

[2009.8.13]

104 <2009.8.13>

< 11613 ,1984.12.31 >

1 () 1985 1 1 .

2 () .

1.

2. 가

3.

4.

5.

6.

7.

8.

9.

10.

3 () 2

. .

4 (가) 가

가

1984 12 31 .

5 () 20 2

가 가

22 .

6 () .

" " " " . " .

1 " " " " . " .

4 1 " " " " . " , 2

" " " " . " .

10 2 " " 가 " ," " " 가 " "

" "

" " " " " " " " " " 가 "

.

13 2 " " 가 " .

17 . 20 1 . 22 1 . 23 1 . 25 . 27 1 4 " "

" 가 " .

.

2 1 " " " " " , 2

.

가 2 3

.

3 2 4 . 5 1 11 " " " 가 " .

.

6 1 " " " " ," " " " " .

8 . 10 1 . 12 13 . 14 1 3 . 15 . 17 1 . 17 3 1

3 . 17 6 . 17 7 . 18 . 18 2 . 19 21 23 " "

" 가 " .

11 " " " " " ," " " " " .

17 1 " " " " " .

18 2 " 14 " " 11 " .

20 " " " " " .

.

" " " " " " " .

1 " " " " " " " .

2 1 " " " " " " .

6 . 8 2 . 14 . 15 . 16 1 3 18 " " " 가

" .

9 " " " 가 " .

11 1 " " " " " .

14 1 " " " 가 " .

.

" " " " " " " .

1 " " " " " " " .

2 1 " " " 가 " ," " " " " " ,"

" " " " " , 2 " " " " " ,

1 " " " " .
3 2 " " " " , 1 " (" ")
2 2 3 " " 가 47 ("
2 3 " " " ")" , 2 " " " " ,
" " " " " , 3 " " " 가 " ,
, 3 2 " 2 1 " " 가 71 " ,
4 1 " " " " , 5 "
" " 가 " , 1 " 2 2 3 "
" 가 47 " , 2 " " " 가
" , 3 " " " 가 " , 5 " "
" "
4 " " " 가 " , " . " "
" .
5 1 " " " 가 " , " " " 가 " , 2 " " "
가 " , " . " " " , 3
" " " 가 "
7 9 2 4 " " " " .
8 1 " 1 " " " ,
2 " 2 " "
10 1 2 • 13 • 17 • 27 28 30 " " " 가 "
. .
11 1 " " " 가 " , " " " " , 3
" " " 가 "
12 3 4 " " " "
. .
14 2 " 3 " " " ,
3 .
18 2 6
. .
18 1 " 8 9 " " 가 68 •
73 90 " , 4 " " " 가 " .
19 2 " " " 가 " , " " " 가 " "
. .
20 1 " " " " , 3 " " " 가 "

23 2 " " " 가 " ," " " 가 " .
26 " 10 " " 20 가 " .
1 3 .

20 8 1 2 .
1. 가 4 11 12 ()
2. 가 9 3 가

22 " " " 가 " , 1 , 2 6
, 7 " " " 가 " ," " " " ,
" " " " , 2 4 " " " " , 8
" " " 가 " ," " " " " , 9 " " " 가
" ," " " " .
가 16

31 6 12 7 " " " 가 " , 6 16 " 가
5 " " 가 9 1 " .
7 () 2

," " " . " ,"
" " " " ," " "

< 11842 ,1985.12.31 >

1986 1 1 .

< 12060 ,1986.12.31 >

1987 1 1 . , 22 1987 7 1 .

< 12262 ,1987.10.26 >

1 () 1987 11 1 .

2 () , ,

3 () "2" "3 " , "2 ()" "5 " , "3 " "6 "

4 () 50 1 "2 (.)" "2 5 " , "3 " "6 "

39 1 "2 () 2 ()" "2 5 " , "3 " "6 "

가 4 2 " " " 가 " 15 1 " (" ") 5 2 1 3 " " 가 (" ") 14 1 1 6 "

16 1 2 " " " 가 " 17 1 " 1 " " 8 " , 2 " " " 가 (" ") " .

18 " " " " 19 2 .

37 1 21 가 가 14 1 1 6 가 4 6 , (.) 4 5 .

98 6 1 3 "2 " "5 " 11511 9 "2 " "5 "

15 1 3 " . 1 2 (.)" " 1 6 "

< 12375 ,1987.12.31 >

1 () 1988 1 1 , 1988 7 1

1. 22 . 31 1 43 3

2. [3] 가 가 2 (2), 가 2 가 (3)·(4), (4)·(5)

3. [6]

2 ()

3 ()

"1 1 " , "1 " "1 3 "

4 () 가

15 1 " 1 6 " "1 6 "

37 1 " 1 6 " "1 6 "

15 1 3 " 1 5 " "1 5 "

3 1 3 2

3 2. 가 4 1 2 가

3 1 6 " 5 2 1 2 " " 가

14 5 "

< 12589 ,1988.12.31 >

() 1989 1 1 . , [4] 가 가 2

가 2 (6) 1989 7 1

() 2 2

< 12816 ,1989.10.11 >

() 1989 11 1

() 6 6

1 6 2

< 12852 ,1989.12.14 >

, 1989 11 1

< 12894 ,1989.12.30 >

1990 1 1 . , [4] 가 가 2 (6)

1990 7 1

< 13072 ,1990.8.13>

() 1990 8 15 .

()

4

5

가

< 13173 ,1990.12.1>

1 () .

2 ()

가

7 " " " " , " " " " " , 21 .

45 1 • 100 • [2] " " " " .

<24>

3 4

< 13184 ,1990.12.18>

1 () 1 .

2 () 가 .

102 1 29 " " " " .

<18>

< 13236 ,1990.12.31>

1991 1 1 .

< 13282 ,1991.2.1>

1 () .

2 4

5 () <86>

<87> 가

35 " " " " .

<88> <148>

< 13564 ,1991.12.31>

() 1992 1 1 .
<2001.6.30>

< 13646 ,1992.5.18>

() 1992 7 1 .

() 1981 4 4
91 1 2

1995 6 30 .

< 13824 ,1992.12.31>

1993 1 1 .

< 14071 ,1993.12.31>

1994 1 1 .

< 14312 ,1994.6.30>

< 14397 ,1994.10.6>

1 () . < >

2 12

13 ()

가

9 1 “ ” “ , ” .

14

< 14507 ,1994.12.31>

1 () 1995 1 1 .

2 () .

3 1 6 “ 가 ” .

[] 7 .

27 1 2 “ 가 ” “ 가 ” .

5 1 “ 가 ” “ 가 ” .

110 3 2 “ 가 ” “ 가 ” .

38 1 “ 가 ” “ 가 ” , 39 2
 “ 가 ” “ 가 ” .
 가 .

1 “ ” “ ” .

3 2 “ ” “ ” .

6 1 10 “ ” “ ” .

14 “ ” “ ” .

15 “ ” “ ” , 1 “ 가
 ” “ 가 ” , 2 “ 5 4
 ” “ 가 ” .

16 1 “ ” “ ” .

17 “ ” “ ” , “ ” “ ” , 1 2 “
 ” “ ” , 2 “ 가 ” “ 가
 ” .

18 “ ” “ ” , “ ” “ ” .

19 “ ” “ ” , 1 “ ” “ ” , “ ”
 “ ” .

가 .

2 3 “ 가 ” “ 가 ” .

가 .

24 1 4 “ 가 ” “ 가
 “ 2 3 ” 가 ” “ 가
 ” .

가 .

1 “ 가 ” “ 가 ” .

2 “ 가 ” “ 가 ” .

3 1 3 2 “ 가 ” “ 가 ” ,
4 “ ” “ (가 73 2 가
.) ” , 6 “ 가 ” “ 가
” .

4.19

3 1 1 3 “ 가 ” “ 가
” .

5 1 3 “ 가 ” “ 가 ” .

14 3 “ 가 ” “ 가 ” .

9 11 “ 가 ” “ 가
” .

12 “ 가 ” “ 가 ” .

13 , 14 1 2 , 15 • 16 2 • 38 • 39 41 “ 가
” “ 가 ” .

11 2 “ 가 ” “ 가 ” .

<16>

18 1 4 “ 가 ” “ 가
” .

<17>

37 1 “ 가 ” “ 가 ” ,
“ 가 ” “ 가 ” .

<18>

18 3 “ 가 ” “ 가 ” .

<19>

107 1 2 2 “ 가 ” “ 가
” .

<20>

59 1 “ 가 ” “ 가
” .

<21>

51 1 10 54 1 2 “ 가 ” “ 가
” .

<22>

3 1 2 4 “ 가 ” “ 가
” .

<23>

49 2 “ 가 ” “ 가 ” .
50 2 “ 가 ” “ 가 ”

<24>

102 1 2 “ 가 ” “ 가
” .

<25>

31 1 1 “ 가 ” “ 가 ” .

<26>

11 2 “ 가 ” “ 가 ” .

<27>

20 1 2 “ 가 ” “ 가 ” .

<28>

14 2 “ 가 ” “ 가 ” .

<29>

20 8 1 “ 가 ” “ 가 ” ,
2 “ 가 ” “ 가 ” .

31 6 16 “ 가 ” “ 가
” .

<30>

2 2 “ 가 ” “ 가 ”
, 3 “ 가 ” “ 가 ” .

19 1 2 “ 가 ” “ 가 ”

3 () 가

< 15792 ,1998.5.9>

, 22 26 4 6 1998 1 1

< 15870 ,1998.8.21 >

1 ()

2 () 가

8 “ ” “ 가 ”

89 93 2

102 1 25 • 31 33

3

< 16174 ,1999.3.3 >

1 () , 8

2001 1 1

2 ()

(2

) 가 8

가 8

8

8

< 16659 ,1999.12.31 >

() 2000 1 1

()

() 7 가

12 31

1988

8 2

< 16876 ,2000.6.27 >

1 () 2000 7 1

2 ()

11 2

가

64 2

가

14

" " " "

2

가

64 2

12 2

가

< 17094 ,2000.12.30>

()

2001 1 1

, 27 2 27 3

2001 7 1

(

)

5

6·25

2001 6 30

< 17115 ,2001.1.29>

1 ()

2 4

5 () <80>

<81> 가

35 1 2 " " " "

<82> <152>

< 17158 ,2001.3.27>

1 () 2001 3 27

2 () <21>

<22> 가

23 84 2 2 " " " "

<23> <25>

3

< 17289 ,2001.6.30>

()

2001 7 1

(

)

13564 가

2

< 17290 ,2001.6.30 >

2001 7 1 .

< 17479 ,2001.12.31 >

2002 1 1 .

< 17565 ,2002.3.30 >

() , 2002 3 1 . , 20 1 • 2 4
2002 10 1 .

() 3 2 1 가
3 • 94 3 1 .

< 17687 ,2002.7.27 >

1 () .

2 () 가 .

63 4 " " " " .

3

< 17857 ,2002.12.30 >

() 2003 1 1 .

()) 6 • • 4.19

가 가

20 3 .

< 17952 ,2003.4.4 >

2003 5 1 .

< 18227 ,2004.1.17 >

, 2004 1 1 .

< 18312 ,2004.3.17 >

< 18318 ,2004.3.17>

() , 42 • 46 • 48 56 60 2004
1 1 . , 73 2004 4 1 .
() 3

()

2004 3 31

< 18684 ,2005.1.17>

, 2005 1 1

< 18982 ,2005.7.27>

()

()

() 3

3

< 19106 ,2005.10.26>

. , 46 2005 10 30

< 19272 ,2006.1.13>

, 2006 1 1

< 19347 ,2006.2.16>

1 ()

2 4

5 () 가

88

< 19388 ,2006.3.10 >

< 19780 ,2006.12.21 >

1 () 2007 1 1 . , 16 1 4 , 17 1 5 ,
18 , 19 1 3 , 94 , 99 1 , 102 1 1 102 4

2 (가) 23 4 가
24 60 가 가

, 23 1 23 2 · 3

4 2 24 60 .
23 4 가 가 ·

가 , 23 1 4
23 2 4 2 가 가

23 4 가 24 60 가
가 , 2 23 1 23 2
2

3 () 가 .
10 2 3 5 " " " " .
19 1 10 2 8 " " " " .
7 2 " " " " .
22 1 2 " " " " .
20 5 " 15 17 , " " 15
, 17 43 2 " .

1 " 가 " " 가
」 " .

< 19839 ,2007.1.19>

, 2007 1 1 .

< 19979 ,2007.3.27>

2007 3 29 . , 69 · 78 · 83 · 102 1 15 102 4
2007 7 1 .

< 20514 ,2007.12.31>

1 () . , 8 2 2 2008 1 1

2 ()

3 () 3

< 20561 ,2008.1.22>

, 2008 1 1 .

< 20727 ,2008.2.29>

1 ()

2

3 ()

가

9 1 3 " " " " .

35 1 2 " " " " " .

102 1 15 4 " " " " .

< 21050 ,2008.9.26>

1 () 2008 9 29 .

2 (가) 56 2 32 2

3 () 「 가 」 (

9079) 56 4

가

< 21280 ,2009.1.28 >

, 2009 1 1

< 21573 ,2009.6.26 >

1 () . < >

2 () 가

57 1 " 「 」 " " 「 」 " .

3 4

< 21574 ,2009.6.26 >

1 () 2009 7 1

2 () 63 3

3 ()

12 " 「 가 」 64 " " 「 가

」 64 1 " .

< 21686 ,2009.8.13 >

1 ()

2 ()

3 () 3

3

< 21867 ,2009.12.7 >

1 () 2009 12 10 . < >

2 7

8 ()

가

23 3 84 2 2 " 「 」 26 1 1 " " 「 」 26 1 1

2 " .

9

< 21990 ,2010.1.15>

, 27 2, 4, 5 2 6 2 2010 1 1

< 22151 ,2010.5.4>

1 () 2010 5 5 .

2 3

4 () <32>

<33> 가

30 " 「 」 21 1 " " 「 」 36 1 " .

<34> <192>

< 22269 ,2010.7.12>

1 () . < >

2 () <30>

<31> 가

61 4 2 " " " " .

<32> <136>

< 22467 ,2010.11.2>

< 22493 ,2010.11.15>

1 () 2010 11 18 .

2 3

4 () <18>

<19> 가

32 2 1 , 73 1 102 4 " " " " .

<20> <115>

5

< 22607 ,2010.12.31 >

2011 1 1 .

< 23003 ,2011.6.30 >

2011 6 30 .

< 23488 ,2012.1.6 >

1 () . < >

2

< 23515 ,2012.1.13 >

, 2012 1 1 .

< 23885 ,2012.6.27 >

1 () 2012 7 1 .

2 (가) 가

.

가

16 2

10

1

.

3 () 23 , 26 , 26 2, 26 3, 4 2, 5 2 5 3

가 (11041 가

3),

가

4 () 가 , 11041 가

(" ") 73 2

, 가 3 1

가 , 73 2 , 가

3 1 .

5 () 가

14 1 , 19 1

3

6 ()

3 .

7 ()

25 , 25 2 25 3

8 ()

가 , 73

2 ()

, 가 58 2

9 () ()

, 11041 가 3

)

20 4 4 3

1. 4 1 3 5 , 73

2

2. 6 , , 4 · 19 , 73 2

가

(

11041 가 3

)

20 4 4 3

1. 6 , , 4 · 19 , 73 2

2. 7 , , 4 · 19 , 73 2

가

10 () ()

, 11041 가 3

) 가 , 73 2

가 23 4 2

. < 2013.1.14 >

()

1. 가. 12 1 1 (4 · 19 97

) 2
 60
 . 12 1 2 , 3 4 (7 149
 , , 4 · 19 가
 가 1
 .) 60

. 12 1 2 , 3 4 60 97

2. 가. 12 1 1 (4 · 19)
 2 60
 24 60 가

- 1) 5 274
- 2) 6 1 274
- 3) 6 2 7 274
- 4) 274

. 12 1 2 · 3 4

- 1) 60 24 60 가 274
- 2) 55 24 60 274

. 12 1 2 , 3 4

- 1) 60 24 60 274
- 2) 55 60 55 274

3. 12 1 2 · 3 4 149
 가 (24 60
)

4. 12 1 2 · 3 274

· 가

5. 2 12 1 2 , 3 4

가. (7 , , 274
 4 · 19 가
)가 2
 . 가 3 가 가
 1 27 4 .

6. 12 1 1 21

7. 가. 12 1 2 , 3 4

() 1) 1 50
 2) 2 185
 3) 가 3 2) 가
 1 18 5 가 .
 . 12 1 2 , 3 4

1) 가 1
 2) 가 2 100
 3) 가 3 2) 가 370
 1 37 가 .

8. 4 1 4 · 6 · 12 17

1 1
 가. 1 1 1,402
 . 1 2 881
 . 1 3 422

1. 1 5

2. 2 3 24 60

(2 가
, 「 」 24 25
「 」 26 1 1 2
) 24 60

(,
11041 가 3
) , 4 · 19 ,
73 2 26 5 3
. < 2013.1.14 >

- 1. 1 1 : 209 7
- 2. 1 2 : 202
- 3. 1 3 : 194 3
- 4. 2 : 65 1

11 () (3
, 11041 가)
6 2 6 2 2

1. 4 1 3 5 , 73

2

2. 6 , 4 · 19 , 73 2

가

(,
11041 가 3
)
6 2 6 2 2

1. 6 73 2 . 가

2. 7 , , 4 · 19 , 73 2
가

12 (가) 73 2
()
(9 11), , , ,
94 2 .

13 () 5 · 18 .
6 4 " 「 가 」 82 " " 「 가
」 74 5" .

9 2 " 「 가 」 35 37 , 40 42
, 42 2, 43 49 , 49 2 50 59 " " 「 가
」 35 37 , 40 42 , 42 2, 42 3, 43 , 44
, 47 49 , 49 2 50 59 " .
12 2 15 1 " 「 가 」 82 " " 「 가
」 74 5" .

5 1 " 「 가 」 4 1 4 · 6 · 11 · 14
16 " " 「 가 」 4 1 4 · 6 · 12 · 15 17 " .
가

24 1 " 가 2" " 「 가
」 3" .

44 1 2 " 「 가 」 가 4
1 2 · 4 · 6 · 11 · 14 16 " " 「 가 」
가 4 1 2 · 4 · 6 · 12 · 15 17 " .

14 () 「 가
」 가

2012 7 1

< 24309 ,2013.1.14 >

1 ()

2 ()

2013 1 1

4, 4 2 6 4 · 19

2012 7 1

< 24412 ,2013.3.23 >

1 ()

2

3 ()

가

9 1 4 가

3

"

"

"

"

35 1 2 "

"

"

"

[별지 서식] <신설 1996.12.31>



국가유공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년 월



이 증서를 국가유공자증부에 기입함. 제 호

18183-01511일

91.12.27 승인

[별표 1] <개정 2012.6.27>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구분	기준 및 범위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5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6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7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	기준 및 범위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

	<p>은 사람</p> <p>가. 군인(군부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대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p> <p>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p> <p>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p> <p>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p> <p>마. 비부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p>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p> <p>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p> <p>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p> <p>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p>

[별표 2] <개정 2009.8.13>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

구분 번호	신 체 상 이 별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자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자
4	두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5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6	두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7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8	두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9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10	양쪽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11	반신(상반신 또는 하반신)불수로서 활동 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자
12	한 팔과 한 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되어 의수(義手) 및 의족(義足) 착용이 불가능한 자
13	음성기관이나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14	반신(좌반신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15	두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6	두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18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19	음성기관이나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20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21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평생 동안 노무(勞務)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22	한 팔과 한 다리가 상실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5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6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중 상처가 심하여 다리가 단축되었거나 고관절(股關節)이 굳어 의족 착용이 불가능한 자
27	뇌골(腦骨) 부상으로 헤르니아(hernia)가 있는 자
28	한 팔이 수장부(手掌部)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29	한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30	두 다리 중 한 발이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31	두 발이 상실되고 한쪽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32	얼굴에 현저한 추상(醜相)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33	쇄골, 견골 및 척추 전체가 현저하게 굳거나 굽어진 자
34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35	한쪽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의 무릎관절 및 고관절이 굳은 자
36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고 같은 쪽 좌골이나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
37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이 있는 자
38	난치 또는 불치의 혈액병이 있는 자
39	내분비계통의 심한 장애로 항시 투약을 필요로 하는 자
40	난치성 저혈압이나 고혈압으로 항시 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
41	난치성 심장혈관계통 장애가 있는 자
42	난치 또는 불치의 피부질환이 있는 자
43	장기(臟器)에 악성종양이 있거나 양성종양이라도 수술 후 합병증이 예상되는 자
44	병변(病變)으로 난치의 요도질환이나 치료후유증이 있어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5	난치 또는 불치의 정신계통의 장애로 보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
46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7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8	한 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다른 손의 네 손가락 이상의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다섯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4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자

[별표 3] <개정 2012.6.27>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1102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110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급	110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급	110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 협착이 있는 사람
	1108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5급	110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1110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6급 1항	111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1112	한 눈이 실명된 사람
6급 2항	111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11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1201	두 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이 있는 사람
	1301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급 3항	1202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
7급	11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111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1117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1203	한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
	1204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
	1205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1302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2. 귀, 코 및 입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급	2401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	210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2402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501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2102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3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2103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4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502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2104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301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2405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6	상악(上顎)·하악(下顎) 치아 중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3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210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1	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2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7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8	상악·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4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2303	외부 코의 4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9	상악·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7급	2106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107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2	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4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정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2410	상악·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411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파편 잔사(殘渣) 및 반흔조직(癍痕組織)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정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3. 흉터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급	3101	전체 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顔面部)에 3도 화상으로 인한 고도의 추상(醜相)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3급	3102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3103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5급	3104	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6급 2항	3105	전체 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107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7급	3106	전체 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108	외모에 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4101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4102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103	뇌골(腦骨)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언어 및 청각기능도 모두 잃은 사람
	420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급 2항	4104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105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106	두부(頭部) 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있고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
1급 3항	4202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4107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과 언어기능 또는 보행기능과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4108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203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4109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 언어기능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110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4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	4111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5	정신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급	411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4206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6급 1항	411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7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2항	4114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4208	정신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7급	4115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510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1급 3항	5102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510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5104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201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510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급	510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2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6급 1항	510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203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109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의 적출(摘出)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	511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4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6. 체간(體幹)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3급	6101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 장애가 있는 사람
4급	6102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6103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4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6105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6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6107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8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1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6202	늑골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7급	6109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3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不整癒合)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7101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102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2항	7103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4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급 3항	7105	두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6	두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107	양쪽 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사람
2급	7108	한쪽 팔을 어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상박의지(上膊義肢)의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3급	7109	한쪽 팔을 어깨관절 미만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7110	한 팔을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전박의지(前膊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7111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7112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13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4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7115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6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7117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18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9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1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0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302	열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30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	7120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21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22	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
	712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2	한 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203	한 팔의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7304	열 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거나 강직(強直)된 사람
	7305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0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7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30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 3항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712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4	팔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311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31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	------	--------

1급 2항	810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3항	8102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3	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급	8104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대퇴의지(大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3급	8105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미만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6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07	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고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적으로 앉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4급	8108	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하퇴의지(下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8109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8110	한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11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1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1항	8113	한 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8114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5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1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2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2	양 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	8118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9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

		가 있는 사람
	8120	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종족부 또는 후족부 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812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3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4	한 다리의 경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8303	양 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4	양쪽 발가락 중 다섯 발가락을 종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5	한 발의 다섯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3항	8306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7급	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5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8307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종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의 근위지절간관절을 잃은 사람
	830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9011	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1급 2항	9012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급 3항	9013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급 3항에 해당되는 사람
2급	902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3급	903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급	904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5급	905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6급 1항	9061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2항	9062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3항	9063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7급	907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3의2] <신설 2012.6.27>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

질 병 명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코드(KCD)	시기
뇌경색, 뇌출혈	I60.1-I67.9, S06.7-S06.6	3년 이후
뇌막염	A17.0+, A87-A87.9, G00.9-G03.9	3년 이후
절핵성 척추염	M49.0*-M49.09*	3년 이후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M89.0-M89.09	3년 이후
만성 심부전	I50-I50.9	3년 이후
평형기능 장애	H81-H81.9	2년 이후
안면 신경마비	G51.0	2년 이후
각막 혼탁	H17.1-H17.9	2년 이후
유리체, 망막 질환	H33-H42.8*, H43-H43.9	2년 이후
무수정체안	H27.0	2년 이후

비고: '시기' 란의 기간의 기산시점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

[별표 4] <개정 2013.1.1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2,336	5급	1,218
1급 2항	2,203	6급 1항	1,112
1급 3항	2,109	6급 2항	1,023
2급	1,875	6급 3항	686
3급	1,752	7급	348
4급	1,470		

2.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023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2명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구분	월 지급액(천원)
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1,118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대	1,297
3) 부모 또는 조부모	1,099
나.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1,066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대	1,238
3) 부모 또는 조부모	1,049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	

우 그 유족	
1) 배우자	390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대	565
3) 부모 또는 조부모	371

4. 4·19혁명공로자: 월 150천원

[별표 4의2] <개정 2013.1.14>

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월 지급액 (천원)
1. 고령수당	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4·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재일학도의용군인 중 60세 이상인 사람	97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이상인 배우자	149
	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97
2. 2명 이상 사망수당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배우자 또는 부모로서 가. 사망자(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자는 제외한다)가 2명인 경우 나.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의 지급액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74천원을 더하여 지급한다.	274
3. 전상수당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상군경	21

[별표 5] <개정 2012.6.27>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

구분	월 지급액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본급 가. 가족이 3명 이하인 경우: 150,000원 나.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200,000원 2. 가산금 5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별표 5의3] <신설 2012.6.27>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의2제2항 관련)

구분	부양가족	월 지급액 (천원)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	100
	나. 미성년 자녀 1명당	50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미성년 자녀 1명당	100
3.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미성년 제대 1명당	200

[별표 5의4] <개정 2013.1.14>

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

구분	월 지급액 (천원)
1. 태극무공훈장	230
2. 을지무공훈장	225
3. 충무무공훈장	220
4. 화랑무공훈장	215
5. 인헌무공훈장	210

[별표 5의2] <신설 2012.6.27>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 관련)

구분	지급기준	월 지급액 (천원)
상시 간호수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이등급 1급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이등급 1급2항 4104호부터 410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상이등급 1급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100
수시 간호수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시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별표 3 제9호에 따른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1,400

[별표 5의5] <개정 2013.1.14>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

구분	월 지급액
6·25전몰군경의 자녀	1.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이 연금을 전혀 못 받은 경우 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 1,024,000원 2. 제1호 외의 경우: 870,000원

[별표 6] <개정 2013.1.14>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

사 망 자 별	지급액(천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1,504
나.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1,244
다.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인 사람	927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4·19혁명공로자	927
3.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	927
1) 배우자	42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대	217
3) 부모 또는 조부모	23

[별표 6의2] <개정 2013.1.14>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1급 1항	1,023	3급	729
1급 2항	1,023	4급	447
1급 3항	1,023	5급	195
2급	852	6급 1항	89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2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합산한다)

구분	월 정지금액 (천원)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95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74
3) 부모 또는 조부모	76
나.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	
1) 배우자	43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15
3) 부모 또는 조부모	26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	

[별표 6의3] <개정 2013.1.14>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2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지급액
1.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별표 7] <개정 2013.1.14>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3조제2항 관련)

구분	중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특수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
		인문	실업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준하는 과정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과정	
1명당 연 지급액 (천원)	120	140	180	520	700	230

3. 사립학교	가.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사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사 나.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	---

[별표 8] <개정 2009.8.13>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구 분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p>「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공무원</p> <p>가.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이하 <p>나. 특정직공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중 교사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사 · 「군인사법」 제3조에 따른 군인 중 준사관 및 부사관 · 「군무원인사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 중 6급 이하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직원 중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 그 밖에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p>다. 기능직공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급
2. 공사기업체·공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별표 9] <개정 2009.8.13>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관련)

분류번호	업종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5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3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3
10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3
11	금속광업	5
12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4
15	음식료품 제조업	5
16	담배 제조업	7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은 제외한다)	4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3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
26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7
27	제1차 금속산업	6
28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6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4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8
41	수도사업	8
45	종합건설업	5
46	전문직별 공사업	5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
52	소매업(자동차 제외)	4
55	숙박 및 음식점업	4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
60100	철도운송업	5
60211	도시철도 운송업	5
61	수상운송업	4
62	항공운송업	5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64	통신업	5
65	금융업	7
66	보험 및 연금업	7
6601	생명보험업	5
66031	손해보험업	5
6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7
70	부동산업	5
70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4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4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73	연구 및 개발업	5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3
80	교육서비스업	4
85	보건업	4
86	사회복지사업	4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사업	3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5
90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3
91	회원단체	5
92	수리업	5
93	기타 서비스업	3
95	가사 서비스업	3

(주)

1. 위 표의 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 1. 7.)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임
2. 업종분류는 위 표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① 세세분류(5단위), ② 세분류(4단위), ③ 소분류(3단위), ④ 중분류(2단위)의 순서로 적용함

[별표 9의2] <신설 2012.6.27>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84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지급대상	보조비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8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부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4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	100분의 60

[별표 10] <개정 2009.8.1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별표 11] <개정 2012.6.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1호	300만원
2.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제1항	500만원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3호	300만원
5. 법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4호	300만원